

안전인증을 위한 심사종류별 제출서류(제108조제1항 관련)

심사 종류	법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계·기구 및 설비	법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방호장치·보호구
예비심사	1. 인증대상 제품의 용도·기능에 관한 자료 2. 제품설명서 3. 제품의 외관도 및 배치도	왼쪽란과 같음
서면심사	다음 각 호의 서류 각 2부 1. 사업자등록증 사본 2.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 3.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(제108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 4. 기계·기구 및 설비의 명세서 및 사용방법설명서 5. 기계·기구 및 설비를 구성하는 부품 목록이 포함된 조립도 6. 기계·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방호장치 명세서 및 방호장치와 관련된 도면 7. 기계·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부품·재료 및 동체 등의 강도계산서와 관련된 도면(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만 해당한다)	다음 각 호의 서류 각 2부 1. 사업자등록증 사본 2.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 3.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(제108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 4.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명세서 및 사용방법설명서 5.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조립도·부품도·회로도 및 관련된 도면 6.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앞면·옆면 사진 및 주요 부품 사진
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	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 1부 1. 품질경영시스템의 수립 및 이행 방법 2. 구매한 제품의 안전성 확인 절차 및 내용 3. 공정 생산·관리 및 제품 출하	왼쪽란과 같음

		<p>전후의 사후관리 절차 및 내용</p> <p>4.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완시스템 절차</p> <p>5. 부품 및 제품의 식별관리체계 및 제품의 보존방법</p> <p>6. 제품 생산 공정의 모니터링, 측정시험장치 및 장비의 관리방법</p> <p>7. 공정상의 데이터 분석방법 및 문제점 발생 시 시정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방법</p> <p>8. 부적합품 발생 시 처리 절차</p>	
제품 심사	개별 제품 심사	<p>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</p> <p>1. 서면심사결과 통지서</p> <p>2. 기계·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재료의 시험성적서</p> <p>3. 기계·기구 및 설비의 배치도(설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)</p> <p>4. 크레인 지지용 구조물의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구조물에 지지되는 경우만 해당하며, 정격하중 10톤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)</p>	해당 없음
	형식 별 제품 심사	<p>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</p> <p>1. 서면심사결과 통지서</p> <p>2.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결과 통지서</p> <p>3. 기계·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재료의 시험성적서</p>	<p>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</p> <p>1. 서면심사결과 통지서</p> <p>2.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결과 통지서(제110조제1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</p> <p>3.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포함된 재료의 시험성적서</p>